

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활성화사업  
민간위탁 동의안



구 미 시

#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3. 10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외국인근로자들의 노동·의료·생활상담 및 한국어교육,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적응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활성화사업을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사업 운영의 전문성 제고
- 사업의 기획·운영 및 수행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시간·비용 절감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

## 2. 주요내용

가. 사무명 :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활성화사업

1) 사업위치 : 구미시 일원

2) 예산액 : 963백만원(도비 288, 시비 675)

3) 사업내용

- 외국인근로자의 노동·법률·의료·생활상담
- 외국인근로자의 긴급구호(숙식 제공 및 생필품 지원)
- 한국어교육, 문화체험, 교류행사 등

나. 추진근거

- 1) 「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제6조(지원의 범위)
- 2) 「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제14조(업무의 위탁)
- 3)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

다. 위탁사무

- 1) 외국인근로자의 노동·법률·의료·생활상담

2) 외국인근로자의 긴급구호(숙식 제공 및 생필품 지원)

3) 한국어교육, 문화체험, 교류행사 등

라. 위탁기간 : 2024. 1. 1. ~ 2026. 12. 31.(3년간)

※ 매년 위탁기관 공모 후 위수탁 협약 체결

마. 위탁조건

1)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, 책임성, 공신력이 높고 사업수행에

필요한 인력 및 노하우를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
- 상담센터 : 사무공간 및 별도로 분리된 상담실 등 확보

- 쉼터 : 사무공간 및 별도로 분리된 쉼터 공간 등 확보

- 센터장 1명, 상담원 1명 이상의 종사원을 갖추어야 함

※ 상담원 :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경력자)

2) 최근 3년 이상 외국인근로자 관련 상담센터, 쉼터 운영 경험이

있는 구미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

1) 선정방법 : 수탁기관 선정 기관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

가) 기관적격자 심의위원회

○ 구성 근거 :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

○ 구성 인원 : 6명 이상 15명 이하 (위원장 1 포함)

○ 위원 자격

- 위탁 사무를 소관하는 부서장 또는 실·국·소장

-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

- 변호사·공인회계사·노무사·기술사·건축사·세무사 등  
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

-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 
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

-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 전문가, 사회적경제 전문가

-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·공정성  
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2) 평가내용 : 사업계획, 사업수행능력, 지역사회기여도 종합 심사  
가) 평가항목(안)

구 분	평가항목	배 점
계		100
사업수행기관 적격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법인설립 유무</li> <li>▪ 법인·단체의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또는 쉼터 운영실적(비영리법인 설립 일자)</li> </ul>	20
사업수행기관 인력·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시설 보유 현황(사무실/상담실(쉼터) 구분 여부)</li> <li>▪ 상담원 또는 사회복지 자격보유 현황</li> <li>▪ 종사원 중 상담국가 출신자 현황</li> </ul>	30
사업계획 적정성 (정성평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사업목표 및 목적의 적합성</li> <li>▪ 사업내용의 참신성 및 실현가능성</li> <li>▪ 예산집행계획의 적절성과 효율성</li> </ul>	30
지역사회기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외국인근로자 복지 관련 지역사회기여도</li> <li>▪ 유관기관·단체 네트워크 구축능력</li> </ul>	20

3) 평가방법 : 사업계획서 자료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 
사. 성과평가결과[2022년 운영실적보고서 기준]

- 1) 외국인근로자 노동·의료·생활·상담건수 목표(2,000건) 초과 달성(9,498건)
- 2) 외국인근로자 무료한국어 수업 횟수 목표(60회) 초과 달성(244회)

아.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### 3. 부서 의견

- 외국인근로자의 복지증진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
-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
- 2023년 제2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“적정”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

제6조(지원의 범위)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1.5, 2015.10.5>

1.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
2. 고충·생활·법률·취업·인권 등 상담
3. 생활편의 제공, 긴급보호 및 구호
4. 외국인주민을 위한 건강·문화·체육행사 등 지원
5. 외국인·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
6. 외국인 가정 복지증진 사업
7.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

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
2. 결혼이민자 등이 시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사회적응교육, 한국어교육, 직업교육·훈련
3.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영양·건강에 대한 교육, 산전·산후도우미 파견, 출산용품 지원,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 지원
4.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, 부부교육, 부모교육,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

5.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 이민자 등의 보호·지원
  6.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·번역 서비스의 제공
  7.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·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, 다문화자녀 글로벌 리더 육성 지원
  8. 다문화가족을 위한 문화·체육·합동결혼식 등 지원
  9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개정 2015.10.5>
-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15.10.5>

- 제14조(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.5, 2015.10.5, 2021.10.6.>
-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.5, 2015.10.5>
- ③ 삭제 <2015.10.5.>

## □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

#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

## 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 :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 인건비, 한국어교육, 문화체험 등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활성화사업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 : 2023년도 지급기준에 준하여 산정

3. 비용추계의 결과 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출	321	321	321	321	321	1,605

4. 재원조달 방안 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비	-	-	-	-	-	-
도비	96	96	96	96	96	480
시비	225	225	225	225	225	1,125
민간	-	-	-	-	-	-
기타	-	-	-	-	-	-
합계	321	321	321	321	321	1,605

5. 부대의견 : 본 추계결과는 운영비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재정소요액이 변경될 수 있음.

6. 작성자 : 노동복지과 외국인근로자지원팀 윤유란(☎ 480-6217)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구 분	금액(천원)	산 출 기 초
총 계	321,000	
인건비	288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센터장 : 800,000원×12월×5개소 = 48,000,000원</li> <li>- 상담실장 : 2,400,000원×12월×5개소 = 144,000,000원</li> <li>- 상담원 : 2,000,000원×12월×4개소 = 96,000,000원</li> </ul>
강사수당	4,500	- 한국어교육 강사수당 : 30,000원×30회×5개소 = 4,500,000원
사무관리비	7,5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국어교재구입 : 10,000원×50권×5개소 = 2,500,000원</li> <li>- 홍보물품제작 : 1,000원×500부×5개소 = 2,500,000원</li> <li>- 사무용품구입 : 500,000원×1회×5개소 = 2,500,000원</li> </ul>
공공운영비	12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기요금 : 100,000원×12월×5개소 = 6,000,000원</li> <li>- 전화및통신요금 : 100,000원×12월×5개소 = 6,000,000원</li> </ul>
문화행사	9,000	-김장담그기 등 문화행사 : 1,800,000원×1식×5개소 = 9,000,000원

소 관 부 서		노동복지과
입 안 자	과 장	유 태 란
	팀 장	신 현 숙
	담 당 자	윤 유 란 (480-6217)